

서울특별시의회
제332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9. 9.

교 육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916호

나. 발 의 자 : 김기덕 의원

다. 발의일자 : 2025년 8월 8일

라. 회부일자 : 2025년 8월 14일

II. 제안이유

- 서울시 내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학생의 권리 신장 및 차별을 해소하고자,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차원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장애학생의 문화예술활동 등에 해당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, 특수교육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

III. 주요내용

- 기본계획 수립·시행에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항 규정 (안 제4조)

- 통합교육 지원에 대한 상위법 근거하여 특수교육 교원 및 인력 채용에 대한 조항 신설 (안 제9조의3)

Ⅳ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, 「문화예술진흥법」, 「학교체육 진흥법」 등
2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참조
3. 입법예고 : 2025. 8. 20. ~ 8. 24.(의견: 없음)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박광선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8일 김기덕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916호로 발의되어 2025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,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교원 및 인력 채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1)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4조)에 대한 검토

- 안 제4조는 교육감이 수립하는 ‘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’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현재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¹⁾ 및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²⁾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현장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

1)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15조(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·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·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2)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(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 활동 등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, 전시관, 박물관 및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·참여·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, 놀이기구,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 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런하고 있습니다.

-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‘서울특수교육 기본계획’ 3)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래 [표-1]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[표-1]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

프로그램명	2024	2025
특수학교 자유학기(년)제 문화예술교육	- 대상교: 28교 - 프로그램: 77개 - 참여학생: 319명 - 예산액: 225,000천원	- 대상교: 28교 - 프로그램: 43개 - 참여학생: 253명 - 예산액: 150,000천원
특수학교 협력종합예술 강사 파견	- 대상교: 27교 - 강사수: 45명 - 예산액: 197,456천원	미운영
특수교육대상자 e페스티벌	- 참가학교: 38교 - 참여학생: 83명 - 프로그램: 22개 - 예산액: 14,960천원	- 참가학교: 38교 - 참여학생: 76명 - 프로그램: 23개 - 예산액: 13,180천원
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문화예술교육	○ 특수학교방과후학교 예산 지원을 통한 운영	
지역 및 유관기관 연계 문화예술교육(비예산)	○ 특수학교 미8군악대 공연 관람 ○ 서울공예박물관 및 서울시청 박물관 연계 체험활동	

- 참고로 타 시·도교육청(8개)에서는 이미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⁴⁾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.

- 3) 2024 서울특수교육(서울시교육청 발행)
2.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
2-2. 진로·직업교육 및 문화예술·체육 활성화
2-2-2. 문화예술·체육 활성화
- 4) 시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 제정 현황

연번	자치단체	법규명	제정일
1	경상북도교육청	경상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	2024.11.11.
2	대구광역시교육청	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	2024.5.20.
3	대전광역시교육청	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	2017.7.7.
4	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	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	2023.12.18.
5	인천광역시교육청	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	2025.4.21.
6	전라남도교육청	전라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	2024.4.4.
7	충청남도교육청	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	2023.5.30.
8	충청북도교육청	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	2024.5.17.

- 이와 같은 문화예술교육은 일부 조사결과⁵⁾에 따르면,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단순한 예술 활동을 넘어 자기표현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.

또한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며,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바,

안 제4조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전인적 성장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.

2) 통합교육 지원(안 제9조의3)에 대한 검토

- 안 제9조의3은 종전 통합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에 장애유형·장애정도, 학교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 교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(안 제2항 신설)하고, 이때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까지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3항 신설)하고 있습니다.
- 이와 관련해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(이하 ‘특수교육법’) 제21조(통합교육)⁶⁾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(통합교육을 위한 시설·설비 등)⁷⁾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학급에서 원활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장애유형, 장애정도, 학교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 교원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
5) 출처 : 부산 지적장애학생 어머니 인식 조사(2012) 및 경남 특수학교 특수교사 인식 조사(2016)

6) 「특수교육법」 제21조(통합교육)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.

7) 「특수교육법 시행령」 제16조(통합교육을 위한 시설·설비 등)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둘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
2.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
3.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
4.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또한 「특수교육법」 제28조(특수교육 관련서비스)⁸⁾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, 교육감이 각급학교의 장에게 지원인력⁹⁾을 제공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 안 제9조의3의 제2항 및 제3항은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속적 증가¹⁰⁾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교원 및 지원인력의 채용은 교원 배치 기준¹¹⁾ 및 한정적 예산 등을 이유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통합학급 인력 지원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인력 및 예산 확보 노력을 반드시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.(행정관리담당관-10439, 2025.8.20.)

8) 「특수교육법」 제28조(특수교육 관련서비스)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9) 「특수교육법 시행규칙」 제5조(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)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, 신변처리, 급식, 교내외 활동,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.

10)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추이 : ('19년) 11,922명 → ('24년) 14,546명(2,624명↑) (2025학년도 특수학급 설치 확대 추진계획,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)

11) ① 특수학급 **교원** 배치 기준(서울시교육청) : 공립 초·중등학교 특수학급 교원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의 규정 및 초·중등 학교급별 교원 배치 기준에 의거하여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배치.

② 서울시교육청 **특수교육실무사** 배치 기준

구분	평가기준	배점	비고
정량 평가	특수교육대상자 수	20	
	지원요구 학생 수	30	
	기타 보조인력 수 (자치구청 지원인력 및 사회복무요원)	10	
정성 평가	학교별 지원의 필요성	40	정성 평가를 통해 장애유형, 장애정도, 학교 및 지역적 특성 고려

- ☐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의안심사지원팀장	정진국(2180-8263)	입법조사관	김명신(2180-8269)
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

관계 법령

문화예술교육 지원법 (약칭: 문화예술교육법)

[시행 2024. 10. 22.] [법률 제20494호, 2024. 10. 22., 일부개정]

- 제15조(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·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·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② 국·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·장비,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.
- ③ 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·장비, 문화예술교육사·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약칭: 발달장애인법)

[시행 2025. 8. 17.] [법률 제19649호, 2023. 8. 16., 일부개정]

- 제27조(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 활동 등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, 전시관, 박물관 및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·참여·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, 놀이기구,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 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(약칭: 특수교육법)

[시행 2025. 6. 21.] [법률 제20565호, 2024. 12. 20., 일부개정]

- 제21조(통합교육)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

방, 교육과정의 조정, 제28조에 따른 지원인력의 배치, 교구·학습보조기·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 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·운영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설비 및 교재·교구를 갖추어야 한다.

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.

제28조(특수교육 관련서비스)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,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,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, 각종 학습보조기,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, 통학비 지원,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기숙사를 설치·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.

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,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·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.

⑧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(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 다)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
⑨ 교육감(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)은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(약칭: 특수교육법 시행령)

[시행 2025. 2. 28.] [대통령령 제35284호, 2025. 2. 25., 일부개정]

제16조(통합교육을 위한 시설·설비 등) 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, 세면장·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, 연령, 장애의 유형·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,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·대체기구 등의 교재·교구를 갖추어야 한다.

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둘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
2.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
3.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
4.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(약칭: 특수교육법 시행규칙)

[시행 2025. 6. 21.] [교육부령 제360호, 2025. 6. 20., 일부개정]

제5조(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)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, 신변처리, 급식, 교내외 활동,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.